

-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-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. 12. 1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12. 1

다. 상 정 일 자 : 제133회 사하구의회(제2차 정례회)

제1차 총무위원회(2005.12.5)상정.채택

2. 제안설명요지(하태생 을숙도문화회관장)

가. 제안이유

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이 개정(2005. 6. 23)되어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위해 현행 규정상 시·도지사의 권한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하고, 시·도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·군·자치구의 조례로 일원화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도로의 노면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 이를 금지할 규정이 없어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추가(안 제5조)
- 시 조례에서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과 구 조례에서 규정한 종류별 표시방법을 조합하여 조문 일원화(안 제8조 내지 제17조)
-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종류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, 지하철역 안내 표지판 등을 신설하여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의 합법화(안 제10조)
-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등(안 제19조 내지 제20조)
-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의 기준마련(안 제21조 내지 제26조)
 ⇒ 법률의 위임에 따라 광고물 등이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 일치하는지 각종 법규위반 행위는 없는지, 공인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안전도 검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.
-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·신고수수료의 현실 부적합 부분을 개정(안 제33조)

▣ 허가·신고 수수료 조정내용

(단위:원)

| 광고물의 종류 | 현 행 | 개 정 | 비고 |
|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|
|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○ 전주·가로등의 배너기 | 10개 이하 5,000 | 1개당 4,000 | |
| | 10개초과시 5개당 2,000 | | |
|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○ 비행기·선박 양측면 ○ 차량 양측면 | 10,000 | 50,000 | |
| | 2,000 | 10,000 | |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및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
- 입법예고 : 2005. 10. 25~2005. 11. 14 (20일간, 별도의견 없음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이 05. 6. 23자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광고물 관리업무가 특별시장,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던 것을 시장·군수 는 구청장(자치구)에 위임하는 것으로 변경되고, 기타 약간의 구체적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총 35개조와 부칙으로 되어있으며,
- 현재까지 주요사항은 「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」로 규정하고 이중 일부 구체적인 사항을 자치구청장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

- 전부 「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」로 통합하여 규정한 것인데, 이는 관련조례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행정자치부에서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개정 표준안”이 시달되어 그 안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춘 것으로
- 그 주요내용은 골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으며, 각 조문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

- 5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- 6. 토 론 요 지 : 없음
- 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